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6)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김태산)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9566호, 2009. 4. 1. 공포·시행)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471호, 2009. 5. 6. 공포·시행)되고,
-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행정

- 안전부령 제89호, 2009.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공중화장실등”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함.(안 제 1조)
- 나.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는지?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가 없음. · 개방화장실이 특정 시설에 한정되어 지정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과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음. · 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개방화장실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개발화장실 지정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여 지정하고, 전기료 및 상수도료 등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 조례로”를 “이 조례에”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를 “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6조 별표에서”로 하고, 제5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을 “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을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관리기준”을 “관리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장 및 제6장의 장 번호와 제목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제6장 유료화장실 신고”로 하고,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제7장 과태료 부과”로 한다.

제15조 다음에 제5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신설하고,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98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0.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9566호, 2009. 4. 1. 공포·시행)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471호, 2009. 5. 6. 공포·시행)되고,
-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89호, 2009.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공중화장실등”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함.(안 제 1조)
- 나.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 조례로”를 “이 조례에”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를 “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로 하고, 제5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

용”을 “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을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관리기준”을 “관리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장 및 제6장의 장 번호와 제목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제6장 유료화장실 신고”로 하고,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제7장

과태료 부과”로 한다.

제15조 다음에 제5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신설하고,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1회 사용료		원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부 천 시 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 적) ----- ----- ----- ----- 시행에 필요 -----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3조 (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p> <p>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의 범위) ① ----- ----- 이 조례에 ----- -----</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생략)</p> <p>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p>	<p>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p> <p>1.~5. (현행과 같음)</p> <p>5.-----</p> <p>-----</p> <p>-----</p> <p>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p>
<p>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p> <p>범 위 에 서 -----.</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p> <p>-----.</p>

현행	개정안
<p>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현행	개정안
<p>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p> <p>-----</p> <p>-----</p> <p>- <u>따</u> <u>른</u></p> <p>-----</p> <p>-----</p>
<p>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p>	<p>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p> <p>-----</p> <p>-----</p> <p>-----</p> <p>-----</p> <p>-----</p> <p>-----</p> <p>-----</p>
<p>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u>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p> <p>----- <u>법 제9조에 따른</u></p> <p>-----</p> <p>-----</p> <p>-----</p> <p>-----</p> <p>-----</p> <p>-----</p> <p>② <u>제1항에 따라</u></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 -----<u>예산의</u>-----<u>범위에서</u>-----.</p>
<p>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u>구역 안에서</u>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u>구역에서</u> 행사 등 ----- 으 로 ----- ----- ----- ----- -----.</p>
<p>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p> <p>① <u>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u>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생략)</p> <p>② 이동화장실의 <u>관리기준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p> <p>③ (생략)</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p> <p>① <u>제14조에</u> 따라 ----- -----.</p> <p>1.~4. (현행과 같음)</p> <p>② -----<u>관리방법</u>-----.</p> <p>1.~3. (현행과 같음)</p> <p>4. <u>제8조에</u> 따른 -----</p> <p>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u>제5장 간이화장실 설치·관리</u></p>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p>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p>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u></p> <p>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 (준수사항) <u>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u>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u>제16조의 규정에 의한</u> 신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p>3. <u>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u>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p> <p>4. <u>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유료화장실 신고</u></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 ----- ----- ----- ----- ----- ----- -----.</p> <p>제17조(준수사항) <u>제16조에 따라</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8조에</u> 다른 ----- 2. <u>제16조에</u> 다른 ----- ----- -----

현행	개정안
<p>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p> <p>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p>	<p>3.-----</p> <p>-----</p> <p>4. <u>그</u> <u>밖</u>에</p> <p>-----</p> <p>-----</p>
<p><u>제6장 과태료 부과</u></p>	<p><u>제7장 과태료 부과</u></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u>제21조의</u>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p> <p>-----<u>제21조에</u> <u>따</u>른</p> <p>-----</p> <p>-----.</p>
<p>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시행규칙) -----<u>시행</u></p> <p><u>에</u> <u>필요한</u></p> <p>-----.</p>

〈관계 법령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 2008.3.21, 2009.4.1, 2009.6.9>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④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9.27>

⑤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9조 (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7.1>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